

5

배아 등의 보존 및 폐기 · 연구목적 제공
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별지 제17호 서식]

배 아 폐 기 대 장

폐기내용				③ 처리 방법		결재	
연월일	① 폐기량(개수)	폐기한 잔여배아 (또는 잔여난자) 관리번호	② 비고	자가처리	위탁처리	담당	기관장

※ 작성 방법

- ① "폐기량"란에는 폐기 당시의 총량을 기록할 것
- ② "비고"란에는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할 것. 다만, 배아연구기관은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시기를,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기관은 잔여배아를 잔여난자로 바꿔서 사용하고 비교란에는 제공받은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.
- ③ "처리 방법"란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○표시를 할 것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 안내